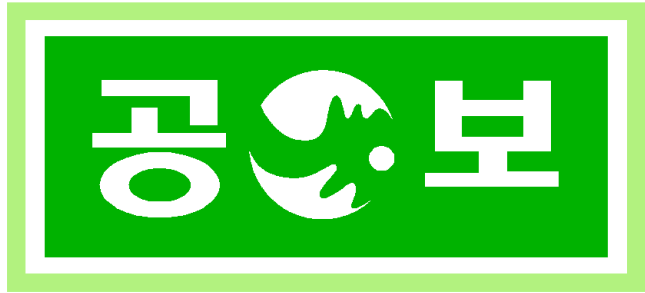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보	기 관 의 장

**제 836 호 2013. 8. 19(월)**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34호[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(변경)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35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3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5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738호[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] .....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740호[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·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규칙안] .....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741호[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] -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742호[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] ..... 12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**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34호

##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(변경) 고시

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을 허가하고,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8월 19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시설의 명칭 : 매곡천 공공하수도 설치공사
2. 위        치 : 신천동 745-118번지 일원
3. 공 사 규 모 : 차집관로 부설 L = 115m, D600mm
4.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  명 : 신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
  - 나. 주   소 : 울산 북구 신천동 321-1
5. 공사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
  - 가. 당   초 : 2013. 1. 14. ~ 7. 30.
  - 나. 변   경 : 2013. 1. 14. ~ 8. 31.
6. 공사시행허가서 및 허가조건 : 게재생략
7. 다른 법률 등의 의제 : 하천법 제30조, 제33조
8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방재과(☎052-241-7882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35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8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8-3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8. 1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-1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부동로 18-3(진장동)	2013-08-19	진장부동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 고자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1-23	
2	울산광역시 북구 상인동 842	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 17(상인동)	2013-08-19	기존 자연마을인 양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3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88-15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1길 10(진장동)	2013-08-19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 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55-4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15-6(화봉동)	2013-08-19	화동은 화봉의 옛지명이며 신세가 검검이 붙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 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-19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5길 56(호계동)	2013-08-19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198 1-2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1길 36(명촌동)	2013-08-19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74	울산광역시 북구 지명3길 8(송정동)	2013-08-19	이 지역의 옛지명이므로 지역성을 띤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8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48 7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1길 9(진장동)	2013-08-19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 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9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64-4	울산광역시 북구 상행2길 31(연암동)	2013-08-19	상행마을 영조때 상행리라 불려 상행마을의 유래가 되었고 현재도 사용 되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9-01-09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36호

#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8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8-1외 9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척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8. 1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8-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8-13	2013-08-19	건축물대장 말소	
2	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 22	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10-1	2013-08-19	건물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13-12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12, 512-2	2013-08-19	건물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 32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66-5	2013-08-19	건물멸실	
5	울산광역시 북구 능서1길 45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54	2013-08-19	건물멸실	
6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63-4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-1	2013-08-19	건물멸실	
7	울산광역시 북구 원연암2길 30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00-5	2013-08-19	건물멸실	
8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86-1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25-11	2013-08-19	건물멸실	
9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114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18-2, 220-4	2013-08-19	건물멸실	
10	울산광역시 북구 원연암2길 59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-76, 1286-75	2013-08-19	건물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738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□산림보호법□제45조의9 및 □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□ 제2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, 예방사업(사방사업) 계획 수립에 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3.8.14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

1. 모집인원: 4명
2. 접수방법
  - 접수기간: 2013.8.14.(수)~8.23.(금) 18:00까지
  - 접 수 처: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산림담당(전화 052-241-7933)
  - 접수방법: 직접방문, 우편 및 이메일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    - 우 편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 1004-1) 북구청 도시녹지과 산림담당
    - 이메일: ksh0711@korea.kr
  - 제출서류: 신청서 1부(※붙임참조)
3. 선정기준
  -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
  -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    - ※ 위원회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여성 신청자 우선
4. 선정결과: 2013.8.27.(화)까지 개별통지
5.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 산림담당(담당자: 김성하, ☎241-793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[붙임: 신청서 서식]**

**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
위원 신청서**

성 명		성 별	남( ), 여( )
주민등록번호		최종학력 (전 공)	
주 소			
직 장 명 (직 위)			
연 락 처	휴 대 폰:	자 택:	
E-mail			
주요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</li> <li>•</li> <li>•</li> <li>•</li> </ul>		

- 개인정보 수집 목적: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
  - 개인정보 이용 기간: 임기 만료시까지
-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(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)

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.

2013. . .

신청인: (서명)

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740호

##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규칙안

「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및 「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8월 19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(2013.6.17.)에 따른 법령상 개선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」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,
- 「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」개정(2012.11월)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일화 추진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정의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(조례안 제2조제1호)
- 나.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 중 수집·운반비로 한다는 규정 삭제(조례안 제16조제3호)
- 다.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신설(제6장 보칙)
  - 동별·마을별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
  - 불법투기·무단소각 등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 추가
- 다. 「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」개정(2012.11월)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일화 추진으로 봉투 색깔 흰색 추가(시행규칙안 제2조의2제1항 별표4)
- 라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「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」에서 계약

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반영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 전면 개정(시행규칙안 제4조 별지 제4호)

- 1) (고용승계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
  - 2) (고용유지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
  - 3) (근로조건 보호) 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
  - 4) (정보공개)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
  - 5) (임금명세서 제출)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
- 마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의 판매대금 중 수집·운반비 제외 규정 포함  
(안 제11조제4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환경미화과장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기타 참고자료 등  
다. 제출처

-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환경미화과

- 전화번호 : 052)241-7802, 팩스번호 : 052)241-7809

### 4. 기타사항

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 
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741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울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8월 19일  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시행(법률 제10389호 2011. 7.24)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평가대상 (안 제5조)
  -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함
- 나. 평가지침 작성 (안 제6조)
  -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작성
- 다. 평가의 실시(안 제8조)
  -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현장평가, 서류평가,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
- 라. 현장평가단 구성 (안 제10조)
  - 지역 주민, 관련공무원, 청소·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
- 마.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(안 제12조)
  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 패널티 부여
  -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. 9.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환경미화과장, 전화: 052-241-7802, FAX: 052-241-780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」 제정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742호

###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,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3년 8월 19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공고기간 : 2013. 8. 19. ~ 9. 3(15일간)

○ 변경하는 도로명주소

고지대상자	생년월일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
“별도열람”				

※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(☎ 052-241-7585,7586) 및 도로명주소검색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(고시)일 : 2013. 9. 9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(☎052-241-7585,758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승달 대상자

연번	고시대상자	생년월일	종전주소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변경사유
1	고 병 준	1960.01.08.	연암동 379-2	상방로 177-1	상방로 153-1	2001.03.22.	중속도로구간 변경